

대법원 2019다203644, 2019다208021, 2019다253205, 253212(병합) 손해배상기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오석준)¹⁾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히타치조센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들에서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 203644 판결)

1. 사안의 개요

- 2019다203644: 망인과 원고 A는 1944. 4. ~ 1944. 5.경 구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 공장에서 근로정신대원으로서 강제노역에 종사하다가, 1944. 12. 7.경 동남해지진 발생으로 원고 A는 심한 화상 등을 입었고, 망인은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하여 원고 B가 그 재산 중 609/28,050지분을 공동상속함
- 2019다208021: 원고는 1944. 9. 15.경부터 히타치 조선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였음
- 2019다253205, 253212(병합): 망 C 등 14인은 1944. 8. ~ 1944. 9.경 근로

1) 2019다203644, 2019다253205, 253212(병합): 주심 대법관 안철상, 2019다208021: 주심 대법관 오석준

정신대원으로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산하 나고야, 도쿄 등지의 각 군수공장에 동원되어 강제노역에 종사하다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및 시모노세키 피항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하여 피폭 후유증 기타 장애에 시달린 끝에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위 망인들을 각 상속지분별로 공동상속함

-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상호변경 및 흡수합병을 거쳐 설립된 일본 기업임
- 원고들은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2019다203644, 2019다253205, 253212(병합)], 피고 히타치조센 주식회사[2019다208021]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소제기 및 재판 경과
 - 여○○ 등 2005.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본제철 주식회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2008. 4. 3. 청구기각판결 → 2009. 7. 16. 항소기각판결 →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2013. 7. 10. 환송후 원심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 피고 재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 망 정○○등 2000. 5. 1. 부산지법에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 → 2007. 2. 2. 청구기각판결 → 2009. 2. 3. 항소기각판결 →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2013. 7. 30. 환송 후 원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선고 → 피고 재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2. 소송의 경과

- ▣ 제1심: 원고들 일부 승
 - 2019다203644: 원고 A 1억 2,000만 원, 원고 B 3,256,684원(망인의 위자료 1억 5,000만 원 × 609/28,050지분)
 - 2019다208021: 5,000만 원
 - 2019다253205, 253212(병합): 피해자들별 각 9천만 원씩(원고들 각 상속지분 상당 금액 인용)
- ▣ 원심: 항소기각
 - 피고들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주요 쟁점

- ▣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멸시효 남용 사유로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

나. 판결 결과

- ▣ 상고기각

다. 주요 쟁점 관련 판단 근거

- ▣ 관련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 채권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한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한 2009다68620 판결 및 2009다22549 판결(2012년 판결)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에서 논란이 계속되었고,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으며, 피고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도 이에 동조하면서 배상을 거부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은 사법절차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았음
-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그로써 해당 사건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고, 또한 환송판결의 기속력도 환송 후 재판에서 새로 제출되는 주장과 증거에 따라 미치지 않을 수도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 등과 같은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음
- 대법원은 2012년 판결 중 2009다68620 사건의 재상고심인 2013다61381 사건 판결(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같은 취지의 환송 후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음. 이로써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음**

- 결국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라. 기타 쟁점 관련 판단

- 대한민국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한 원심 판단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그 실질에 있어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원고 등이 구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피고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원심 판단에 외국법인의 동일성 판단 기준 및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²⁾

2) 2019다208021 사건은 기타 쟁점 중 ‘청구권 협정’ 부분만 상고심 쟁점임